

■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p> <p>제1~4조(생 략)</p> <p>제5조(서류의 제출) ①~③(생 략) ④(신 설)</p> <p>제6조 (사용자 및 은행의 의무) ①~④(생 략) ⑤ 사용자는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관 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간사기관을 선정하여야 합니다.</p> <p>제7~12조(생 략)</p> <p>제13조(재정건전성 확보) ①~③(생 략) ④ 사용자는 은행이 제1항의 재정검증 업무를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p> <p>제14~18조(생 략)</p> <p>제19조(양도 및 담보제공) ①(생 략) ②(생 략) 1~1의2.(생 략) 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 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3~5.(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p> <p>제1~4조(좌 동)</p> <p>제5조(서류의 제출) ①~③(좌동) ④사용자는 제3항의 재정검증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p> <p>제6조(사용자 및 은행의 의무) ①~④ 사용자는 이 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할 때 그 내용 을 가입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⑤ 사용자는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관 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간사기관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사 용자가 간사기관을 선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그 사실을 선 정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 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p> <p>제7~12조 (좌 동)</p> <p>제13조(재정건전성 확보) ①~③(생 략) ④ 사용자는 은행이 제1항의 재정검증 업무를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은행은 제2항의 내용을 근 로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다음 각호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1. 사용자가 운용하는 사내 전산망에 대한 이용 제공 2. 전체 근로자의 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의 제공 3. 전체 근로자에게 시행령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사 항의 통보</p> <p>제14~18조 (좌 동)</p> <p>제19조 (양도 및 담보제공) ①(좌 동) ②(좌 동) 1~1의2.(좌 동) 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 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의료비를 말합니다)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이하 “부 양가족”이라 합니다.) 3~5.(좌 동)</p>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0년 2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p> <p>제2조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1)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2)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3) 부담금 산출 및 재정검증 안내서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p> <p>제2조 (좌 동)</p>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1)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좌 동)</p>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2)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좌 동)</p>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3) 부담금 산출 및 재정검증 안내서 (좌 동)</p>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p> <p>제1~16조 (생 략)</p> <p>제17조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①(생 략) ②(생 략) 1~1의2.(생 략) 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3~5.(생 략) ③(생 략)</p> <p>제18~35조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 (시행일)</p>	<p style="text-align: center;">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p> <p>제1~16조(좌 동)</p> <p>제17조(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①(좌 동) ②(좌 동) 1~1의2.(좌 동) 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합니다)를 부담하는 경우(단, 중도인출은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만 가능)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이하 “부양가족”이라 합니다.) 3~5.(좌 동) ③(좌 동)</p> <p>제18~35조(좌 동)</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 (시행일)</p>

현 행	개 정 (안)
이 계약서는 2020년 2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생 략) (별지1)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생 략) (별지2)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생 략)	이 계약서는 202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좌 등) (별지1)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좌 등) (별지2)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좌 등)

■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16조(생 략) 제17조(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①(생 략) ②(생 략) 1~1의2.(생 략) 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3~5.(생 략) ③(생 략) 제18~35조 (생 략)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생 략) (별지1)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생 략) (별지2)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16조(좌 등) 제17조(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①(좌 등) ②(좌 등) 1~1의2.(좌 등) 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합니다)를 부담하는 경우(단, 중도인출은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만 가능)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이하 “부양가족”이라 합니다.) 3~5.(좌 등) ③(좌 등) 제18~35조(좌 등)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좌 등) (별지1)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좌 등) (별지2) 표준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현 행	개 정 (안)
(생 략)	(좌 동)

■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서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서
제1~15조(생 략)	제1~15조(좌 동)
제16조(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제16조(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①(생 략)	①(좌 동)
②(생 략)	②(좌 동)
1~1의2.(생 략)	1~1의2.(좌 동)
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합니다)를 부담하는 경우(단, 중도인출은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만 가능)
가. 가입자 본인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이하 “부양가족”이라 합니다.)
3~5.(생 략)	3~5.(좌 동)
③(생 략)	③(좌 동)
제17~31조(생 략)	제17~31조(좌 동)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0년 2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계약서는 202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생 략)	제2조(좌 동)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생 략)	(별지1)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좌 동)
(별지2)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교육위탁계약서 (생 략)	(별지2)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교육위탁계약서 (좌 동)

■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부속협정서 개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p> <p>제1~15조(생 략)</p> <p>제16조(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①(생 략) ②(생 략) 1~1의2.(생 략) 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3~5.(생 략) ③(생 략)</p> <p>제18~31조(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0년 2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p> <p>제2조(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1)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2) 개인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p> <p>제1~15조(좌 동)</p> <p>제16조(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①(좌 동) ②(좌 동) 1~1의2.(좌 동) 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합니다)를 부담하는 경우(단, 중도인출은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만 가능)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이하 “부양가족”이라 합니다.) 3~5.(좌 동) ③(좌 동)</p> <p>제18~35조(좌 동)</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p> <p>제2조(좌 동)</p>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1)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좌 동)</p>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2) 개인형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좌 동)</p>